

(586)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인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